



# 물질안전보건자료 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<b>제품명</b>	<b>Mixed-Xylene</b>		
<b>CAS No.</b>	<b>RTECS No.</b>	<b>UN No.</b>	<b>EC No.</b>
1330-20-7	ZE2100000	1307	215-535-7
<b>목록번호</b>	<b>최초 작성일자</b>	<b>최종개정일자</b>	<b>작성부서</b>
AR0003	2008-07-25	2016-12-13	안전보건기획팀

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# 가. 제품명

- Mixed Xylene [AR0003], (이명 : 자이렌, 솔벤트 자일렌, 디메틸벤젠, 혼합 아로마틱 탄화수소)

###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석유화학 원료, 유기 용제 등
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
###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**제조자 정보**
  - 회사명 : GS칼텍스(주) 여수공장
  - 주소 :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번지
  - 긴급 전화번호 :
- **공급자/유통업자 정보**
  - 회사명 : GS칼텍스(주)
  - 주소 :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
  - 담당부서 : 안전보건기획팀
  - 전화번호 : 1544-5151
  - 긴급 전화번호 : 1544-5151
  - FAX 번호 : 02-565-5168

## 2. 유해성·위험성

###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인화성 액체 : 구분3
- 급성 독성(경피) : 구분4
- 급성 독성(흡입: 증기) : 구분4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: 구분2
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: 구분2
- 발암성 : 구분2
- 생식독성 : 구분1B
- 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 : 구분2 (폐, 간, 신경계)
- 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 : 구분3 (마취작용)
- 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 : 구분1 (신경계)
- 흡인 유해성 : 구분1

###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#### ○ 그림문자



#### ○ 신호어

- 위험

#### ○ 유해·위험 문구

-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
-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
- 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
-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- H332 흡입하면 유해함
-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
-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
- H360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
- H371 신체 중 폐,간,신경계 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(11항 참조(MSDS)).
-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(11항 참조(MSDS)).

#### ○ 예방조치문구

##### 1) 예방

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.
-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P210 열·스파크·화염·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 - 금연
-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.
-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십시오.
- P241 폭발 방지용 전기·환기·조명·장비를 사용하십시오.
-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십시오.
-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.
- P260 (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를(을) 흡입하지 마시오.
- P261 (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의 흡입을 피하십시오.
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.
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.
- P280 (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)를(을) 착용하십시오.
-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
##### 2) 대응

- P301+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.
- P303+P361+P353 피부(또는 머리카락)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십시오.피부를 물로 씻으시오/샤워하십시오.
- P304+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.
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P308+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- P309+P311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-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.
- P322 필요한 조치를 하시오.
-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.
- P332+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- P337+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-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십시오.
-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십시오.
- P370+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십시오 (5항 참조).

##### 3) 저장

- P403+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.
- P403+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.
-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.

##### 4) 폐기

- P501 폐기물관리법의 해당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.

#### 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

##### ○ NFPA 등급 (0 ~ 4 단계)

- 보건 : 2, 화재 : 3, 반응성 : 0

#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Xylene	Xylol ; Methyltoluene	1330-20-7 / KE-35427	80~90
Ethylbenzene	Benzene, ethyl- ; Ethylbenzene ; Ethylbenzol ; Phenylethane ;	100-41-4 / KE-13532	10~20

### 4. 응급조치 요령

#### 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.

####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부는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.
-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- 피부 확산을 방지하시오.
- 환자를 씻길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피복의 접촉을 피하시오.

#### 다. 흡입했을 때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.

#### 라. 먹었을 때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- 만약 삼켰다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도록하고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####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- 노출 및 노출 우려시 의학적인 조치, 조언을 구하시오.

###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####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분말소화약제, 이산화탄소, 물뿌림 또는 정규 포말
- 포말, 탄산가스, 트라이케미칼, 할로겐화물소화제
-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
####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인화성 액체 및 증기
-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
-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
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

-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
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- 고인화성: 열, 스파크,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
- 누출물은 화재/폭발 위험이 있음
- 실내, 실외,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
-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
-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(flash back)할 수 있음
-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
-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
-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

#### 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때까지 충분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.
-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.
- 소방서에 알리고, 화재 위치와 유해한 특징을 알려주시오.
-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,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.
- 인화점이 극히 낮은 물질들로 화재진압시 주수소화 효과가 작을 수 있다.

### 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####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
-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(『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』항 참조)를 착용하여, 눈 피부에의 접촉과 흡입을 피할 것.
-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
- 유출 액체 및 누출 부위에 직접 주수하지 마시오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전문가의 감독없이 청소 및 처리를 하지 마시오.
- 피부 접촉 및 흡입을 피하시오.

####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시오.

####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다량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소량 누출 :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.
- 용매를 닦아내시오.
-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은 잠재 위험성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수거하시오.
-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마시오.

### 7. 취급 및 저장 방법

#### 가. 안전취급요령
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(증기, 액체, 고체)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,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시오.
-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의, 작업화를 사용한다.
-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.
- 열, 불꽃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.
-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.

## 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.
-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마시오.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.
-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.
- 화기엄금
- 밀폐용기에 담아 수거하십시오.
- 발암성 물질 저장구역을 지정하여 저장하십시오.

#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- 국내노출기준
  - [Ethylbenzene] : TWA : 100 ppm, STEL : 125 ppm - 에틸 벤젠
  - [Xylene] : TWA : 100 ppm, STEL : 150 ppm - 디메틸벤젠
- ACGIH노출기준
  - [Xylene] : TWA 100 ppm (434 mg/m<sup>3</sup>), STEL, 150 ppm (651 mg/m<sup>3</sup>)
  - [Ethylbenzene] : TWA, 20 ppm (87 mg/m<sup>3</sup>)
- 생물학적 노출기준
  - [Xylene] : 소변 중 Methylhippuric acids : 1.5 g/g 크레아티닌(작업후)
  - [Ethylbenzene] : 소변 중 (Mandelic acid 및 Phenylglyoxylic acids의 합) : 0.15 g/g크레아티닌(작업후)

##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
## 다. 개인 보호구

- 호흡기 보호
 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.
  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  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십시오.
  - 방독마스크(직결식 소형, 유기 화합물용)
  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)
  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: 승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- 눈 보호
 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.
  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십시오.
- 손 보호
 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.
- 신체 보호
 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.

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	
- 성상	액체
- 색	열은 색 혹은 무색의 윤활성 액체
나. 냄새	독특한 냄새
다. 냄새역치	0.2~2 ppm
라. pH	자료없음
마. 녹는점/어는점	-42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137 °C ~ 143 °C
사. 인화점	32°C(o-), 27°C(m-), 27°C(p-), Ethylbenzene 18°C
아. 증발 속도	자료없음
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	자료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6.7/0.9%(o-), 7.0/1.1%(m-), 7.0/1.1%(p-)

카. 증기압	0.7kPa(o-), 0.8kPa(m-), 0.9kPa(p-) @ 20°C
타. 용해도	178mg/L(o-), 162mg/L(m-), 198mg/L(p-),
파. 증기밀도	3.7
하. 비중	0.865~0.875 @15.56°C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3.12(측정치)(o-), 3.2(측정치)(m-), 3.15(측정치)(p-),
너. 자연발화온도	463°C(o-), 527°C(m-), 527°C(p-),
더. 분해온도	자료없음
라. 점도	자료없음
머. 분자량	106.17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###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- 유해중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.

### 나. 피해야 할 조건
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.
- 열, 불꽃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.

### 다. 피해야 할 물질

- 자료없음

###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자료없음

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###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(호흡기)
  -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
- (경구)
  - 자료없음
- (눈·피부)
  -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  -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
###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- 급성 독성
  - \* 경구 독성 - 2000mg/kg < ATEmix <= 5000mg/kg
    - [Xylene] : LD50=3550 mg/kg rat
    - [Ethylbenzene] : LD50 = 3500 mg/kg Rat (NITE)
  - \* 경피 독성 - ATE MIX : 1000mg/kg < ATEmix <= 2000mg/kg
    - [Xylene] : LD50 = 1590mg/kg(mouse)
    - [Ethylbenzene] : LD50 = 15400 mg/kg Rabbit (NITE)
  - \* 흡입 독성 - ATE MIX : 10.0mg/L < ATEmix <= 20.0mg/L
    - [Xylene] : LC50 = 10 ~ 20 mg/L/4hr
    - [Ethylbenzene] : LC50 = 17.4 mg/L/4 hr Rat (4000 ppm/4hr)(EHC, ASTDR)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  - [Xylene] : 중증자극 유발
  - [Ethylbenzene] :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 (NITE)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  - [Xylene] : 중증자극 유발
  - [Ethylbenzene] :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결막에 경미한 자극성, 회복 가능한 손상을 일으킴. (NITE)
- 호흡기 과민성
  -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
  - 자료없음

- 발암성
  - \*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
    - 자료없음
  - \* IARC
    - [Ethylbenzene] : Group 2B
  - \* OSHA
    - 자료없음
  - \* ACGIH
    - [Ethylbenzene] : A3
    - [Xylene] : A4
  - \* NTP
    - 자료없음
  - \* EU CLP
    - 자료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
  - [Ethylbenzene] : 소핵시험 음성 (NITE)
- 생식독성
  - [Ethylbenzene] : 마우스 및 흰쥐에 모체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용량에서 태아 독성(비뇨기의 기형)이 나타남. (NITE)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
  - [Xylene] : 마취작용을 일으킴
  - [Ethylbenzene] : 실험동물에서 중추신경계 영향 및 기도 자극을 일으킴. (NITE)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
  - [Xylene] : 인체에 눈, 코 자극, 만성 두통, 가슴통증, 뇌파 이상, 호흡곤란, 청색증, 발열, 백혈구 감소를 일으키며, 호흡기계, 신경계기능 장애를 유발함
- 흡인 유해성
  - [Xylene] : 액체를 삼키면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
  - [Ethylbenzene] : 탄화수소. 액체를 삼키면 오염에 의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. 동점성률 0.74 mm<sup>2</sup>/s (25 °C) (NITE)
- 고용노동부고시
  - \* 발암성
    - [Ethylbenzene] : 발암성 2
  - \* 생식세포 변이원성
    - 자료없음
  - \* 생식독성
    - 자료없음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### 가. 생태독성

- 어류
  - [Ethylbenzene] : LC50 = 9.09 mg/l 96 hr
- 갑각류
  - [Ethylbenzene] : LC50 = 0.4 mg/l 96 hr
- 조류
  - 자료없음

### 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잔류성
  - 자료없음
- 분해성
  - 자료없음

### 다. 생물 농축성

- 생물 농축성
  - 자료없음
- 생분해성
  - 자료없음

### 라. 토양 이동성

- [Ethylbenzene] : log Kow = 3.15 (11)

**마. 기타 유해 영향**

- 자료없음

**13. 폐기 시 주의사항****가. 폐기방법**

-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소각 처리할 것.
-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하여야 한다.

**나. 폐기시 주의사항**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**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****가. 유엔번호 (UN No.)**

- 1307

**나. 유엔 적정 선적명**

- XYLENES

**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**

- 3

**라. 용기등급**

- II

**마. 해양오염물질**

- 해당없음

**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**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E (Non-water-reactive flammable liquids)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D (Flammable liquids)

**15. 법적 규제현황****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**

- 작업환경측정물질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Ethylbenzene)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)
- 노출기준설정물질
  - 해당됨 (Ethylbenzene)
  - 해당됨 (Xylene)
- 관리대상유해물질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Ethylbenzene 에틸벤젠)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 크실렌)
-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Ethylbenzene)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)
- 제조등금지물질



- 해당없음
- 허가대상물질
  - 해당없음
- 특별관리물질
  - 해당없음

#### 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독물질
  - 해당됨 (85% 이상 함유한 Xylene)
-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  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Ethylbenzene)
  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Xylene)
- 사고대비물질
  - 해당없음
- 제한물질
  - 해당없음
- 허가물질
  - 해당없음
- 금지물질
  - 해당없음

####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위험물에 해당됨 : 제4류 제2석유류(비수용성액체)( 지정수량 : 1000리터)

####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(폐유기용제)에 해당됨.

#### 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
  - 해당없음
- EU 분류 정보
  - \* 확정분류 결과
    - [Xylene] : R10 Xn; R20/21 Xi; R38
    - [Ethylbenzene] : F; R11Xn; R20
  - \* 위험 문구
    - [Xylene] : R10, R20/21, R38
    - [Ethylbenzene] : R11, R20
  - \* 예방조치 문구
    - [Xylene] : S2, S25
    - [Ethylbenzene] : S2, S16, S24/25, S29
- 미국 관리 정보
  - \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    - 해당없음
  - \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    - [Xylene] : 45.3599 kg 100 lb
    - [Ethylbenzene] : 453.599 kg 1000 lb
  - \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    - 해당없음
  - \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    - 해당없음
  - \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    - [Xylene] : 해당됨
    - [Ethylbenzene] : 해당됨
- 로테르담 협약 물질
  -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물질
  -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
- 해당없음

## 16. 그 밖의 참고사항

### 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37호(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SIS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### 나. 최초 작성일자

- 2008-07-25

### 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2010년 02월 01일(1차)
- 2011년 07월 28일(2차) :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변경 (유독물->해당없음)
- 2012년 04월 16일(3차) :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발암성 구분 2를 추가함  
ACGIH Group A4를 ACGIH Group A3으로 변경함(2011년 ACGIH 반영)
- 2013년 06월 25일(4차) :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위험성 구분 별도 표기(이동식 포장용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위험성 구분을 반영하여 그림표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)
- 2013년 11월 04일(5차) : 급성독성(경피) 구분4 추가
- 2014년 01월 10일(6차) : 도로명 주소 반영
- 7 회, 2016-12-13 : 특정표적장기 구체 표기,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변경, 화학물질관리법 명 변경

### 라. 기타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